

「행정위원회 규정」 신구조문대비표

2026. 3. 9. 개정 판 (시행 2026. 1. 26.) → 2026. 5. 4. 개정 판 (시행 2026. 1. 26.)

바뀜 1 · 신설 0 · 삭제 0 · 번호 변경 0

공식 원본 law.syu.ac.kr · <https://suleap.syu.my/r/61/compare?from=1736&to=1747> · 내려받은 때 2026. 10. 21. 오후 12:58:27 · 밑줄은 바뀐 부분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위원) ① 행정위원회 위원은 제1호와 같이 구성하며, 위원 외에 필요 시 초청위원을 둘 수 있다. <개정 2016-02-29> 1. 총장(의장), 기획처장(서기), 부총장, 각 처장, 대학 혁신지원사업단장, 교육혁신원장, 국제교육원장, 생활교육원장, <u>글로벌사회혁신원장</u>, 평생교육원장, 학술정보원장, <u>대학원장</u>, <u>각 단과 대학학장</u>, 교수(1), 직원(1), 기획팀장, 예산팀장, 내부감사 <개정 2024-09-30> ② 위원의 임기는 보직교수의 경우 보직기간동안으로 하며, 교수 1인과 직원 1인의 경우 2년으로 한다.<개정 2020-09-07>	제2조(위원) ① 행정위원회 위원은 제1호와 같이 구성하며, 위원 외에 필요 시 초청위원을 둘 수 있다. <개정 2016-02-29> 1. 총장(의장), 기획처장(서기), 부총장, 각 처장, <u>총장특보</u>, <u>미래융합대학장</u>, <u>창의융합대학장</u>, <u>단과대학장 1인(간호대학장, 신학대학장, 약학대학장은 1년씩 교대로 참여)</u>, 대학원장, 대학 혁신지원사업단장, 교육혁신원장, <u>글로벌사회혁신원장</u>, <u>교양교육원장</u>, 생활교육원장, 평생교육원장, 학술정보원장, 기획팀장, 예산팀장, 내부감사, <u>교수 1인, 직원 1인</u> <개정 2024-09-30> ② 위원의 임기는 보직교수의 경우 보직기간동안으로 하며, 교수 1인과 직원 1인의 경우 2년으로 한다.<개정 2020-09-07>

개정문 (참고본)

원본(law.syu.ac.kr)에 개정문이 없어,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.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.

「행정위원회 규정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행정위원회 위원은 제1호와 같이 구성하며, 위원 외에 필요 시 초청위원을 둘 수 있다.
1. 총장(의장), 기획처장(서기), 부총장, 각 처장, 총장특보, 미래융합대학장, 창의융합대학장, 단과대학장 1인(간호대학장, 신학대학장, 약학대학장은 1년씩 교대로 참여), 대학원장, 대학혁신지원사업단장, 교육혁신원장, 글로벌사회혁신원장, 교양교육원장, 생활교육원장, 평생교육원장, 학술정보원장, 기획팀장, 예산팀장, 내부감사, 교수 1인, 직원 1인

부 칙

이 규정은 2026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.